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- 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1.23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)

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
(부칙안 제2조)
- 나.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 (안 제11조)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」

→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령 정비

- 띄어쓰기 준수 (안 제1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해당부서: 어르신복지과

라. 기 타:

1) 입법예고(2022. 9. 28. ~ 10. 18.) 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- 본 조례안은 어르신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-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¹⁾하고
- 그 밖에 관계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

○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,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그 간의 어르신복지기금의 운용실적과 향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춰 기금 존속기한 연장, 그 밖에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1) 2022. 10. 12. ~ 10. 21.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"기금존속기간 5년 연장안"에 대하여 원안가결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참고

어르신복지기금

□ 기금개요

- 설치목적: 어르신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활동 사업 지원
- 설치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 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설치년도: 1997년(최초 기금조성: 1998년)
- 기금재원: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금이자 적립
- 기금용도
 - 어르신복지 관련단체 지원사업
 -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
 - 어르신의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
 - 어르신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
 - 그 밖의 어르신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
□ 기금 조성액: 1,045,586천원 (2022. 12. 31. 기준 추정액)

(단위: 천원)

| 조성액(A) | | | 집행액(B) | 집행잔액(A-B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계 | 출연금 | 증식이자+반납액 | | | |
| 1,652,101 | 1,000,000 | 652,101 | 606,515 | 1,045,586 | |

□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(2022. 12. 31. 기준 추정액)

(단위: 천원)

| 연도별 | 조성액 | | | | 집행액 | 집행잔액 |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계 (A) | 출연금 | 증식이자 | 기타 (반납금) | 사업지원비 (B) | 당해년도 (A-B) | 누계 |
| 2016년까지 | 1,522,868 | 1,000,000 | 521,377 | 1,491 | 391,325 | 1,131,543 | 1,131,543 |
| 2017년 | 21,010 | | 21,010 | | 18,000 | 3,010 | 1,134,552 |
| 2018년 | 21,014 | | 21,014 | | 40,000 | △18,986 | 1,115,566 |
| 2019년 | 33,153 | | 33,153 | | 35,000 | △1,847 | 1,113,719 |
| 2020년 | 24,611 | | 24,611 | | - | 24,611 | 1,138,330 |
| 2021년 | 12,445 | | 12,445 | | 57,190 | △44,745 | 1,093,586 |
| 2022년(추정) | 17,000 | | 17,000 | | 65,000 | △48,000 | 1,045,586 |
| 합계 | 1,652,101 | 1,000,000 | 650,610 | 1,491 | 606,515 | | |

□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(자금수지총괄)

(단위: 천원)

| 수입계획 | | | | 지출계획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항목 | 2023년 수입액 | 2022년 수입액 | 증감 | 항목 | 2023년 지출액 | 2022년 지출액 | 증감 |
| 합계 | 1,067,586 | 1,110,586 | △43,000 | 합계 | 1,067,586 | 1,110,586 | △43,000 |
| 예치금 회수 | 1,045,586 | 1,093,586 | △48,000 | 비용자성 사업비 | 65,000 | 65,000 | - |
| 이자수입 | 22,000 | 17,000 | 5,000 | 예치금 | 1,002,586 | 1,045,586 | △43,000 |

□ 예치금 상세

(단위: 천원)

| 예치처 | 2021년말 | 2022년말 추정(A) | 2023년말 추정(B) | 증감(B-A)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합계 | 1,093,586 | 1,045,586 | 1,002,586 | △43,000 |
| 구금고(우리은행) | 1,093,586 | 1,045,586 | 1,002,586 | △43,000 |

○ 기금운용: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함

○ 금리현황 (※ 2022. 9. 15. 기준금리 공표일 기준)

- 공금예금 금리: 1.56%

- 정기예금 금리: 6개월 이상 2.43%, 1년 이상 2.51%

□ 2022년 어르신복지기금 지원사업 현황

- 사업예산: 65,000천원
- 교부결정액: 64,900천원(15개 수행기관, 14개 보조사업)

(단위: 천원)

| 연번 | 단체(시설)명 | 사업명 | 교부결정액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합 계 | | | 64,900 |
| 1 | (사)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(채은영) | 어르신사랑방 지도자 전통문화체험 및 심신힐링 | 7,760 |
| 2 |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(강형태) | MAMA (마술로 마을만들기-남성 어르신 마술공연단) | 3,200 |
| 3 |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(송인석) | 살'맛'나는 사할린세대 지원사업 (사할린 어르신 세대 한글문해교육,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) | 3,600 |
| 4 |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(이철우) | 새출발 (어르신 스스로의 가치 인식 변화에 따른 주체적인 삶 지원사업) | 2,950 |
| 5 |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(조인영) | 내 마음 정원 가꾸기 (어르신 치매, 우울, 자살 예방활동 프로그램) | 4,650 |
| 6 |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(이재영) | 삶의 활력소 (기공체조, 밴드체조를 통한 일상 생활의 활력 도모) | 3,000 |
| 7 |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(김지연) | 좋은이웃 실버인형극단 (어르신 전문 인형극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프로그램) | 2,400 |
| 8 |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(김성미) | 청바지 건강 클럽(청춘은 바로 지금부터!) (여가프로그램, 줍깅캠페인을 통한 건강유지 및 공유 공간 환경개선) | 3,750 |
| 9 | 시립강서노이종합복지관 (임부영) | 스마트한 방역 소독 (시니어 고용절벽시대의 신중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) | 3,200 |
| 10 |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(서순애) | 미술로 꽃피우는 "Blossom 청춘 life" (미술을 매개체로 일상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) | 2,950 |
| 11 | 연지어르신복지센터 (범현) | 정원아 나눔을 부탁해 (온·오프라인 정보화교육 및 취미·여가 프로그램 제공) | 3,440 |
| 12 | (사)나눔과기쁨 강서구지부 (김병수) | 홀몸 어르신 밀반찬 배달 (홀몸 어르신 밀반찬 제공) | 5,000 |
| 13 |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(현상분) | 사랑의 영양식 지원 (취약계층 어르신 밀반찬 제공) | 7,000 |
| 14 | 연지어르신복지센터 (벗골어린이공원) | 노(老)리(禮)터(據) 열린 프로그램 (어르신 야외 여가활동 공간 노리터에서 진행하는 여가프로그램) | 2,000 |
| |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(등촌근린공원) | | 2,000 |
| |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(서낭방근린공원) | | 2,000 |
| |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(봉제산근린공원) | | 2,000 |
| | 강서구체육회 (구암근린공원) | | 2,000 |
| | 치매안심센터 (원당근린공원) | | 2,000 |

□ 지방자치법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